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·질환 등을 고려하여,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·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·조정하고,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국가보훈 장애인단서 발급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경찰병원”을 “경찰병원 및 「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소방병원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7호의 6급 2항의 상이등급 7121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“한”을 “두”로 하고, 같은 호 7급의 상이등급 7315를 삭제하며, 같은 표 제8호 6급 2항의 상이등급 8119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“한”을 “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이등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제13조(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) ① (생 략) ②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. 1. 「경찰병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제2항에 따른 <u>경찰병원</u> 2. 내지 3. (생 략) <u>[별표3] 상이등급 구분표(제14조제3항 관련)</u> 7. 팔 및 손가락의 장애	제13조(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「경찰병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제2항에 따른 <u>경찰병원 및 「국립 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립소방병원</u> 2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 <u>[별표3] 상이등급 구분표(제14조제3항 관련)</u> 7. 팔 및 손가락의 장애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이등급 분류번호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체상이정도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2항 7121</td><td><u>한</u>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7급</u> <u>7315</u></td><td><u>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</u> <u>원위지관절(끝쪽손가락뼈마 디관절) 이상에서 잃은 사람</u></td></tr> </table>	상이등급 분류번호	신체상이정도	6급2항 7121	<u>한</u>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	<u>7급</u> <u>7315</u>	<u>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</u> <u>원위지관절(끝쪽손가락뼈마 디관절) 이상에서 잃은 사람</u>	<table border="1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이등급 분류번호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체상이정도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2항 7121</td><td><u>두</u>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td></tr> </table>	상이등급 분류번호	신체상이정도	6급2항 7121	<u>두</u>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	<u><삭제></u>	<u><삭제></u>
상이등급 분류번호	신체상이정도												
6급2항 7121	<u>한</u>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												
<u>7급</u> <u>7315</u>	<u>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</u> <u>원위지관절(끝쪽손가락뼈마 디관절) 이상에서 잃은 사람</u>												
상이등급 분류번호	신체상이정도												
6급2항 7121	<u>두</u>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												
<u><삭제></u>	<u><삭제></u>	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
8.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		8.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	
상이등급 분류번호	신체상이정도	상이등급 분류번호	신체상이정도
6급2항 8119	<u>한</u>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	6급2항 8119	<u>두</u>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7